

대법원 2015. 5. 14 선고 2015다20383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

AA

피고, 상고인

1. 서울특별시

2. 대한민국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8. 선고 2013나2023615 판결

판 결 선 고

2015. 5. 14

주 문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

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